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787호 2013년 7월 23일(화)

조 례

-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2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23일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속초시 조례 제 2330호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가산징수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
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
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제2호의 숙박비(1박당)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숙박비 (1박당)
제2호	40,0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 동 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6조(가산징수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별표]																																				
(단위:원)	(단위:원)																																				
<table><tr><th>구분</th><th>철도 운임</th><th>선박 운임</th><th>항공 운임</th><th>자동차 (버스) 운임</th><th>숙박비 (1야당)</th></tr><tr><td>제1호</td><td>1등급</td><td>1등급</td><td>정액</td><td>정액</td><td>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td></tr><tr><td>제2호</td><td>2등급</td><td>2등급</td><td>정액</td><td>정액</td><td>30,000</td></tr></table>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table><tr><th>구분</th><th>철도 운임</th><th>선박 운임</th><th>항공 운임</th><th>자동차 (버스) 운임</th><th>숙박비 (1야당)</th></tr><tr><td>제1호</td><td>1등급</td><td>1등급</td><td>정액</td><td>정액</td><td>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td></tr><tr><td>제2호</td><td>2등급</td><td>2등급</td><td>정액</td><td>정액</td><td>40,000</td></tr></table>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 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4(생략)	3~4(현행과 같음)																																				